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3년 3월 3일

○ 회부일자 : 2003년 3월 4일

3. 제안이유

○ 전기공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관련사무가
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른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
로 정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○ 전기공사업 등록관련 사무 수수료 신설

· 공사업의 등록신청 : 1건 40,000원

·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: 1건 30,000원

· 공사업의 승계(양수·상속·합병)신고

- 양도·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신고 : 1건 30,000원

- 상속 신고 : 1건 5,000원

· 공사업의 등록중(등록수첩) 재교부 신청

- 승계(양수·상속·합병) 신고 : 1건 5,000원

-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의 부족에 따
른 재교부 : 1건 5,000원

-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및 신고 등 수수료 신설
 - 운송사업자등록 등 12건 : 1건당 1,400원 ~16,000원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이는 전기공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 에 따라
전기공사업 등록 관련사무와

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관련사무가 시·도지사에게 위임되어
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던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·도
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
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동 조례 별표2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
제2호 나목의 (10)

전기공사업의 등록증(등록수첩) 재교부 신청 수수료가 1건당
5,000원으로 ㉠와 ㉡로 구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설명이
필요하다고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